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9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배준영·강선영·박준태

윤상현 · 김소희 · 강대식

고동진 • 구자근 • 허종식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부천 시·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울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인천고등법원	인천광역시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서울고등 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 천 인 천			인천광역시 영종구·제물포구·미추홀구·연 수구·남동구·부평구·옹진군
	인 천	북부	인천광역시 검단구・계양구・서구・강화군
		부천	부천시 • 김포시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의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서울고등법원 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 천	인 천		인천광역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광역시 외에 부천시·김포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29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